



산업災害 현황과 예방 對策

朴 強 洙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상임고문

냉엄한 경제환경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불연속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재해로 인한 손해는 위험관리에서 말하는 순수위험의 하나이지만 투기적위험에 비해 손실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위험에 직면한 최근의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경영관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재해방지는 기업방위상의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註—

지난 8월 21일 노동부는 밝고, 건강한 無災害일 터를 만들기 위한 勞·使·政 간담회를 갖고 들어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를 確行해 나가는 한편 노사가 공동의식을 갖고 전원이 참여하는 무재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을 풀자로 하는 「산업재해減少特別對策」을 발표하였다.

경영자는 이를 계기로 산재추방을 위한 실천 결의로 「나의 기업은 無災害기업이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無災害旗가 항상 휘날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다.

產災는 무조건 막아야

생산기술의 내용은 석기시대의 옛날부터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災害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사실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安全管理은 근대적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귀중한 노동력을 보존 및 활용하고 또 재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방지할뿐만 아니라 경영의 합리화와 生產性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기업경영에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관리업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재해·사고는 생산이나 노동의 능률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이다.安全管理활동은 생산현장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일정기간 노동을 불능하게 하는 재해·사고를 방지한다.

그러므로 安全은 경영관리상의 문제이며 설비 및 작업방법을 안전화한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안전관리활동이 경영관리의 결합을 시정하고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과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기업은 생산 및 배급의 과정을 통하여 크던 작던 기업내에서는 産業災害를 가져오고 기업밖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공해와 환경오염을,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결함상품등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人命尊重의 신념 가져야

그 결과 기업은 이에 대한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산업재해보상책임, 제조물책임등의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등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아무튼 큰 이익 때문에 災害를 허용한다고 하는 이론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人命尊重의 인도적 신념이야 말로 안전관리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등 재해예방체계의 구축과 정부의 각종 재해예방시책에 힘입어 전산업의 災害率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망이나 신체장애가 수반되는

重大災害는 오히려 증가하고 재해로 인해 지급되는 產災報償金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도시건설현장 및 지하철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勞動部에 의하면 91년의 경우 12만8,169명의 災害者가 발생하여 1일 평균 재해자는 427명, 사망자는 8명, 신체장애자는 100명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災害率(1.62%)은 동남아공업국에 비해 아직도 2~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부상의 정도가 심한 강도는 일본의 13배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産業災害에 대한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액도 3조5,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7%에 달하고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2,000억원의 2.8배나되고 금년도 산재보험재정규모가 1조원이나 되는데도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예산이 부족하여 93년도에 1조 5,000억원으로 56%를

〈표1〉

연도별 재해 현황

(단위 : 명, 억원)

| 연도 구분 | 1982 | 1985 | 1987 | 1989 | 1991 |
|----------|---------|---------|---------|---------|---------|
| 재해자 | 137,816 | 141,809 | 142,596 | 134,127 | 128,169 |
| (재해율) | (3.98) | (3.16) | (2.66) | (2.01) | (1.62) |
| 사망자 | 1,230 | 1,718 | 1,761 | 1,724 | 2,299 |
| 산재보상금 | 971 | 1,806 | 2,413 | 3,693 | 7,015 |

〈표2〉

산업별 재해자 현황

(단위 : 명)

| 산업별 구분 | 계 | 제조업 | 건설업 | 광업 | 운수창고업 | 기타 |
|-------------|------------------|------------------|------------------|-----------------|------------------|-----------------|
| 재해자 (분포) | 128,169 (100) | 60,243 (47.0) | 42,302 (33.0) | 6,457 (5.04) | 11,295 (8.81) | 7,872 (6.15) |
| 사망자 (분포) | 2,299 (100) | 614 (26.71) | 801 (34.84) | 359 (15.62) | 320 (13.92) | 205 (8.91) |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산업재해는 인적손실만이 아니라 경제적손실도 엄청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91년도 産業災害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전업종의 재해가 82년의 3.66에서 91년에는 1.6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도시·지하철등 건설물량의 증대로 건설재해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표2 참조〉

豫測可能한 재해원인들

이를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300인이하 中小企業의 재해가 전체재해의 68%이며 특히 재정적으로 영세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없는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전체재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규모가 적을수록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화가 되어가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망재해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전체사망재해의 64%이며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재해원인을 被災근로자의 근속기간별로 보면 산업기능인력부족에 따른 무자격·무기능 근로자의 취업증가로 입사하여 6개월미만이 전체재해자의 56.87%에 해당하는 7만 2,887명이며, 6개월에서 1년까지 사이의 재해자가 9.5%에 해당하는 1만 2,175명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재해가 전체재해의 66.3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채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의 사망재해의 경우는 근속기간 6월미만이 무려 82.02%를 차지하고 있어 일용근로형태라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災害發生의 原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保護具미착용, 안전교육불충분등의 교육적요인에 의한 재해가 전체재해의 62.04%이고 둘째 작업준비 불충분, 안전점검미실시 등 작업관리 결여로 인한 재해가 전체재해의 17.08%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기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勞使의 안전의식 고취만으로도 減少시킬 수 있는 재해가 전체재해의 79.12%를 차지하고 있어 재해예방의 당면대책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의 재해현황을 종합평가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제1차 산재예방6개년 계획상의 96년도 재해감소목표를 2년 앞당겨 선진국 수준인 재해율 1% 미만(0.90%)을 94년도에 조기달성을 위해 노동부는 8월 12일 「산업재해감소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汎政府의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產災豫防 목표 修正해야

〈표3〉

규모별 재해자 현황

| 구분 규모별 | 근로자수 (명) | 재해자수 (사망자수, 명) | 재해율 (%) | 분포 |
|------------|-------------|--------------------|-----------------|-----|
| 계 | 7,922,704 | 128,169 (2,299) | 1.62 | 100 |
| 50인 미만 | 1,826,959 | 50,765 (760) | 2.78 (33.06) | |
| 50~300인 미만 | 2,358,985 | 36,808 (704) | 1.56 (30.62) | |
| 300인 미만 | 3,736,760 | 40,596 (835) | 1.09 (36.32) | |

이 대책에서 제시된 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목표재해율 0.90%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발생률을 매년 18% 씩 현재의 배로 감소시켜 나가고, 한편 사망재해율(萬人率)은 94년도에 1.5% 달성을 목표로 매년 19.6%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목표를 수정하였다.

同대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코자 몇 가지의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無災害운동을 정부주도보다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무재해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동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勞·使·政 3자가 참여하는 「범국민 무재해운동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지기를 제의한 것이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安全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며 이제 안전대책은 「企業의 命運」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전활동의 방침은 「고장 Zero」「손실 Zero」「부상 Zero」를 목표로 底力있는 활기찬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기술이나 노동의 변화와 함께 안전관리활동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고 「전사원의 안전요원화」를 이룩하여 생산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기의 안전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영자가 솔선수범하고 전원이 참가하는 방침과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안전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모든활동의 하나 하나가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안전활동은 그 목적을 「위험의 방지」에 두어야 하며 이와같이 생각하는 것이 극히 합리적인 것이다. 작업장에 현재 존재하거

나 또는 존재가 예측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안전관리방식은 상사로부터 지시되는 Top Down방식을 주축으로 하되 소집단활동방식에 의한 위험예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Bottom Up방식과 결합시켜 스스로가 「필요하다」「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활동과 안전작업이 일체가 되어 행해지도록 하는 라인의 각급관리감독자의 안전책임과 조치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설비를 신·증설할 때 源流管理에 철저를 기할 때가 왔다. 품질보증에서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시하고 있다. 이 생각은 늦기는 하였으나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활용하여 설비의 신·증설 시에 프로세스의 개발단계부터 안전성 평가, 설계심사를 행하고 안전한 설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조공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장의 안전확보의 기초는 제조공정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다. 제조공정의 안정화가 달성되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자의 조업에 대한 주의력이 집중되어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개선이 추진되는 등 안전한 직장이 이룩됨으로써 경영합리화의 지름길이 된다.

넷째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不良品을 방지하며 코스트의 저감, 생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인간형성과 개선과정」을 중시하는 사상에 기초를 두고 사실증시의 견해 및 과학적 해석수법의 교육과 활용에 의해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그 달성감이 「자주적으로 하는 활동,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발전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직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만 된다면 이제까지의 정적인 상태에서 생각하는 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홀륭한 「안전 개선제안」이 도출되는 효과를 가

져올 것이다.

다섯째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 노동부의 재해통계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호구의 미착용, 안전점검의 미실시등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인위적인 재해」가 89%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자기의 직무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열의있는 직장이 되어야 하겠다.

기계가 고기능화하고 자동화되고 대형화 되면 안전하게 가동시키는 조건도 엄하게 된다. 정해진 메뉴얼, 수순은 절대로 지켜야만 한다.

안전교육이라는 문제는 아무리 자동화가 추진되어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더 필요하게 된다.

災害의 발생과 방지의 책임

현재의 법률으로는 작업장과 기계·기구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구급용구를 갖추고, 발생한 재해를 보고하고 재해로 인해 부상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등 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고 있다. 근로자와 사회에 대해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근로자가 주어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적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훈련과 지도를 하고, 또한 개개의 환경조건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에 의해 기계적인 위험성과 불안전행동을 제거하는 도의적책임도 있다.

OSHA(미국의 산업안전위생법)에는 작업장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정해진 대부분의 기준에는 사업주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은 극히 명확하며, 벌칙은 엄하고 경영자에게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과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보다도 경영자가 도의적 책임을 자각하는데 주된 신뢰를 두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법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것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법

률에 의해서 안전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곤란한 업무이기도 한것이다.

(1) 경영자에 의한 관리

재해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원인에는 방호가 되지 않았거나 부적당하게 방호된 기계·공구·장치·강도부족등 기타의 결함이 있는 기계·공구·조명이나 환기가 부족한 작업장등이 있다. 이들의 상태는 분명히 경영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경영자는 장치를 선정, 구입하고 설치를 하여 사용시키고 있다. 그것은 장치의 설계와 제조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경영자는 그것들의 소유자이며, 그 취급, 조작, 보수, 설치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입장이다. 또 재해로 인해 장치의 손상이나 파괴가 발생하던지, 생산이 정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지불할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제조방식의 설계나 결함장치의 수선, 교환 기타 안전작업조건의 유지를 담당자에게 명하는 것도 경영자이다. 그와 같이 관리된 곳에서는 법적책임만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작업장이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책임을 진다.

한편 경영자가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작업을 명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안전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경영자는 작업을 맡길 사람을 고르지만 그것은 경험이 있으며 주어진 작업을 훌륭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근로자를 훈련·지도하여 안전한 방법을 습득시키는 것도 경영자이다. 경영자는 권한의 위양이라는 원리에 의거 감독자에게 안전수행의 기준이나 안전작업규칙을 제정시켜 그것을 강제시킬 수가 있다.

일정한 작업을 하고 임금을 얻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타당한 요구인 경우에 한정되지만 사업

주가 생각하는 대로 작업을 하도록 명령하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양해하고 있다. 그 명령이 안전작업규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제품의 질이나 허용범위를 정한 규칙에 근로자를 따르게 하는 것과 같이 안전작업규칙에 따르게 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감독자의 책임

이제까지 경영자의 책임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이것은 감독자에게도 해당된다. 개인경영의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이 권한의 위양이라는 원리에 따라야 함은 분명한 것이다. 그로 인해 감독자의 책임이 경영자의 대리로서 명령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제1선의 감독자는 재해예방을 생각할 때 독특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실제의 명령을 지시하는 것은 제1선의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명령은 감독자가 설명하고 지도하고 해석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감독자의 말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자는 부하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부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작업을 한다. 부하와는 개인적인 연결이 있어 그들의 습관, 불만, 마음가짐, 인격등에 대해 작업의 능력과 같은 정도로 잘알고 있다. 감독자의 영향력과 그가 보여주는 실례는 감독자의 권위와 같은 정도로 안전하게 작업을 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통솔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안전계획도 감독자의 이해와 지식에 의한 지원이 없으면 완전한 성공을 기할 수는 없다. 경영진은 이것을 잘알고 있어 감독자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의 작업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수한 요소와 방법이 있다고 잘못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감독자의 훈련은 인간공학개론이나 지도력, 심리적, 비결등의 토론에 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

동적으로 가망성이 있는 감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하고 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혹사하지 않고 지도할 것」「미리 변경등의 설명을 할 것」「제안을 얻을 것」「가능한 청찬을 할 것」「정당한 것은 신용할 것」「명령의 이유를 설명할 것」「부하와 그 가정상황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부하의 성질을 기록해 둘 것」「자신의 특질, 성격에 대해서도 기록할 것」「부하에게 호감이 갈 것」「공평할 것」「친절할 것」「인내심이 강할 것」등이 있다.

(3) 근로자의 책임

재해방지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은 당연한 것 이면서 우선 자기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자기의 부양가족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자기의 신체를 움직이는데 충분한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근로자가 명령을 받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동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공장내의 물리적·기계적 잠재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혼자의 의무의 범위내에서는 근로자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장치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사업주에 대해 지고 있다. 또 자기의 권한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불안전상태를 감독자에게 보고할 필요도 있으며 다른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들은 안전에 관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료에게 주거나 안전에 관한 미팅으로 활발하고 유용한 의견을 전개하는 기회도 많을 것이다. 또 조직속의 근로자군의 일원으로서 공장, 작업장내의 안전조사, 안전규칙의 작성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근로자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나 책임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래도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4) 공동책임

재해로 인한 상해방지는 노동조합이다. 경영자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근로조건과는 달리 안전분야에서는 협력적이며 단체협약의 현재의 경향은 노동조합과 경영자가 공동으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이 예방하는 공동의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재해를 방지함에 있어 가장 효과있는 위치는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위치이다” 이 중요한 표현과 함께 제1선의 감독자가 안전계획내에서 열쇠가 되는 인물이며, 열쇠를 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안전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성에 관해서는 감독자는 경영자층 내에서 최소의 중요성밖에 담당하지 않는다. 이 “재해방지의 당사자” 즉 감독자는 안전과 손실제어를 위한 계획을 자기의 상사가 바라는 대로 이해한다. “열쇠”가 되는 인물은 어떠한 계획에서도 (손실의 억제에서도 품질, 생산 또는 코스트측면에서도) 조업경영자의 최상부층이다.

災害防止는 기업방위상의 과제

냉엄한 경제환경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 불연속성은 기업의 생존과直結된다. 재해로 인한 손해는 위험관리에서 말하는 순수위험(損失만을 발생하는危險)의 하나이지만 투기적위험(損失이나 利益의 어느 것인가를 발생하는危險)에 비해 손실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위험에 직면한 최근의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경영관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재해방지는 기업방위상의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마다 재해로 인한 손실을 총계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경영손실을 제어하여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재해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수면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손실방어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도 안전관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적극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산업재해의 방지는 기업자체의 최대의 책무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경제상부담의 과다와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의 이유등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의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안전관리)앞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安全의 선진기업, 무재해가 달성되는 안전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마음가짐이 이제까지와 같은 사고발생후의 뒷정리를 위해 소요되었던 시간·노력·금액·정신적부담의 낭비를 예방에 돌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안전작업은 품질과 능률을 보증하는 작업이므로 安全對策의 성공은 필요자원을 특정의 위험분야에 집중투입하고 개선하는 과감한「安全投資」가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有備無患」의 자세일 것이다.

이제 기업의 활동목표는 「안전하고 무공해의 공장을 만든다」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경영자의 경영혁신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안전은 정부의 시책이나 기다리고 처벌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는 사고방식을 셧어버리고 바로 자기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主役」이요. 기업의 자산인 근로자가 회생당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직시하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안전은 勞使「공동의 목적」「공동의 책임」「공동의 이해」라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쾌적한 작업현장을 조성하는것 만이 생산성을 올리고 노사관계를 안전화시키는「지름길」임을 강조한다. ☺